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3182
----------	------

제출연월일 : 2025. . .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 10,000천원
 - 필 요 성 :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3. 세부내용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대상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26년 본예산	2025년	증감액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0	10,000	-	-	

출연대상

○ 설립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 일반현황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구분되며 해당 출연금은 농업발전계정에 출연

○ 기능 및 주요사업

-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에 경영 및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출연금액 : 10,000천원(2025년 10,000천원)

- 증 감 액 : 없음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소득 증대로 농촌 경제 활성화

검토의견

- 우리시 농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영농기반 조성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기도 31개 시군 출연)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경기도 농업정책과 통하여 존속기한 연장 예정 확인 완료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사업) ① 농업발전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자녀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